

의안번호	2210898
의 퇴 인	서일준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2.
추계번호	25A3330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전문인력의 양성)	○ 전문인력 양성의 주체를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 확대함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12조(창업의 활성화)	○ 창업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뿐 아니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 함(제2항 및 제3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3	안 제20조(이러닝센터)	○ 이러닝센터의 운영 주체를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 확대함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9조(전문인력의 양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(창업의 활성화)	
3	안 제20조(이러닝센터)	

2. 상세 사유

- 안 제9조·제12조·제20조에 따라 이러닝 관련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, 이러닝센터 운영 등의 주체를 현행 정부(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)뿐 아니라 시·도지사로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정사업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시점에서 추정하는 데 한

계가 있음

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의 현행 재정사업으로는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(서비스핵심기술개발,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), 지식서비스기반구축(이러닝산업 활성화) 등이 있음

[표 1] 이러닝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2022	2023	2024	2025예산
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	61,561	53,227	24,077	13,950
지식서비스기반구축	1,032	1,032	725	616

주: 「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재정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
사업 전체가 동법에 근거한 것은 아님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